

광주지방법원 2023. 1. 12 선고 2022나58390 판결 [부당이득금반환]

재판경과

광주지방법원 2023. 1. 12 선고 2022나58390 판결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22. 5. 26 선고 2022가소683 판결

전문

원고, 피항소인주식회사 A

피고, 항소인B

소송대리인 변호사 고주은

변론 종결2022. 11. 24.

판결 선고2023. 1. 12.

제1심판결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22. 5. 26. 선고 2022가소683 판결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N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6,461,63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7. 8.부터 2022. 1. 14.까지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인용한다.

○ 제1심 판결 제3면 제3행의 '없다.'와 '따라서' 사이에 다음 내용을 추가한다.

『피고는, 원고의 주주명부에 4인의 주주가 등재되어 있으나 이는 주식을 형식적으로 분산한 것일 뿐 실질적으로는 피고 1인 소유의 주식회사였으므로 실제로 주주총회를 개최하지 않고 주주총회의사록이 작성되지 아니한 경우에도 1인 주주인 피고의 결정에 관하여 주주총회 결의에 관한 절차상 하자가 존재한다고 볼 수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갑 제3, 5호증, 을 제2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바와 같이 원고의 설립 당시 C이 특허를 이용한 시설 및 운영 자금 마련과 D 제품 개발 및 양산을 담당하기로 하고 그 대가로 실질적으로 원고의 주식 중 40%에 해당하는 8,000주를 부여받되, 그 명의를 C의 동생 E와 지인 F에게 신탁하였던 점, 원고는 피고에 대한 급여 지급 당시 E와 F에게도 급여를 지급하였는바, 당시 C이 위 주식을 피고에게 양도하거나 포기하였던 것으로 보이지도 아니하는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가 피고에게 위 인정사실 나.항 기재와 같이 급여를 지급하였을 당시 피고가 원고의 1인 주주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고는, 상법 제388조에서 이사 보수에 관하여 주주총회의 결의로 정하도록 요하는 취지가 이사의 개인적 이익을 도모하는 폐해와 과다 지급의 방지에 있는데, 피고가 원고의 설립자이자 사실상 1인 주주로서 차입금을 투입하고 사실상 원고의 운영, 관리를 전담하였던 점과 원고의 4대보험 처리와 관련하여 이사로 재직 중인 피고도 급여를 기초로 하는 보험가입처리가 필요하다는 사유로 최소한의 액수인 923,090원의 급여를 책정하여 지급하였던 점에 비추어 보면 원고의 피고에 대한 급여 지급은 극히 소액이고 피고의 업무수행내역에 비추어 과다하지 않으며 회사의 자금을 개인에 지급하기 위한 방편으로 이용된 것이 아니어서 위 상법 규정의 취지에 비추어 볼 때 지급목적이나 가액에 있어 상당성이 있으므로 이를 무효로 볼 수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상법 제388조는 회사와 주주 및 회사채권자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강행규정인 점(대법원 2020. 6. 4. 선고 2016다241515, 241522 판결 참조), 강행규정 위반의 계약을 무효로 주장하는 것이 신의칙에 반하는 권리의 행사라는 이유로 이를 배척한다면 강행규정의 입법취지를 몰각시키는 것이 되어 원칙적으로 그와 같은 주장이 신의칙에 위반된다고 볼 수 없는 점(대법원 2004. 1. 27. 선고 2003다14812 판결 참조)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의 주장과 같이 피고의 업무수행내역이 적지 아니하였고 피고에 대한 급여의 액수가 상당히 적었던 사정을 함께 고려하더라도 피고가 주주총회 결의 없이 지급받은 급여에 관하여 보수청구권을 인정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의 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 제1심 판결 제4면 제4행과 제5행 사이에 다음과 같은 내용을 추가한다.

『피고는, 회사가 이사에게 지급한 급여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은 상행위로 인한 채권으로서 5년의 상사소멸시효가 적용되는데, 이 사건 소는 원고가 급여를 지급한 2014. 7. 7.부터 5년이 지나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위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이 소멸한 후 제기되었으므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상사시효제도는 대량, 정형, 신속이라는 상거래 관계 특유의 성질에 기인한 제도이고, 그 적용 여부는 해당 채권이 상거래 관계에 있어서와 같이 정형적으로나 신속하게 해결할 필요가 있는지 여부에 따라 결정되는 것인바(대법원 2005. 11. 10. 선고 2004다22742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부당이득금반환채권은 주주총회 결의 없이 이사에 급여를 지급하여 강행규정을 위반하였음을 원인으로 그 반환을 구하는 내용의 채권이므로, 상거래 관계와 같이 신속하게 해결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워 10년의 민사 소멸시효기간이 적용된다고 봄이 타당하다. 원고가

피고에게 급여를 지급한 2014. 1. 6.부터 2014. 7. 7.까지의 기간으로부터 10년의 소멸시효기간이 지나기 전에 원고가 이 사건 소를 제기한 사실은 기록 및 역수에 비추어 명백하므로, 피고의 위 소멸시효항변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여야 한다.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판사김진만

판사유상호

판사송인경